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0년 8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19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K-IFRS 제 1116 호 리스 개정공표

세무 및 법률정보

- 민특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 Tax tips: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사항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출처: 금융감독원, 2020. 8. 18]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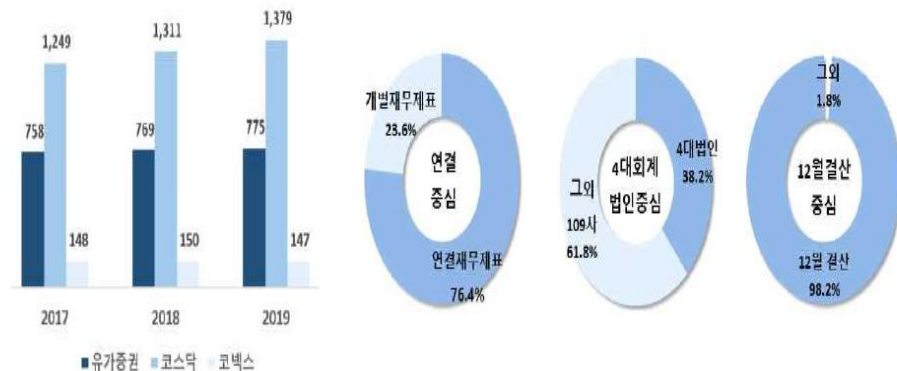
I. 개요

□ (분석대상) '19회계연도 상장법인 2,301*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18회계연도 (이하 '전기') 대비 71사 증가하였습니다.

* '20.3월말 주권상장법인 2,358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57사 제외

◦ 분석대상 중 코스닥 상장법인이 1,379사(59.9%)로 가장 많고, 12월 결산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

감사보고서 분석대상 개요



분석결과

II. 분석결과

감사의견영향

1) 감사의견영향

◆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97.2*로 외감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15 회계연도(99.4%)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65사(한정의견 7사+의견거절 58사)

◦ 이는 新외감법 개정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감사인 책임이 강화되어 엄격한 감사환경이 조성된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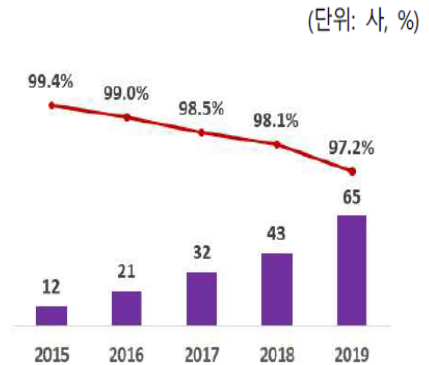
□ (적정의견: 2,236사) 분석대상 상장법인의 97.2%(2,236사)가 적정의견이었으며, 전기(98.1%) 대비 하락(0.9%p ↓)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은 '15회계연도(99.4%)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15년 대비 2.2%p ↓)

□ (비적정의견: 65사)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65사(한정 7사, 의견거절 58사)로 전기(43사) 보다 22사 증가
 ◦ 한정의견은 7사로 전기(8사)보다 1사 감소하였고, 의견거절은 58사로 전기(35사)보다 23사 증가 .
 - 특히 '19년 의견거절 기업(58사)은 '15회계연도 대비 48사 증가(10사 → 58사)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제한(62사), 계속기업 불확실성(42사), 회계기준 위반(1사) 순

*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최근 5년간 적정의견 비율 및 비적정의견 기업 수 추이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적정(비율)	1,990 (99.4)	2,060 (99.0)	2,123 (98.5)	2,187 (98.1)	2,236 (97.2)
비적정	12	21	32	43	65
합계	2,002	2,081	2,155	2,230	2,301



□ (시장별 분포)시장 유형별 적정의견 비율은 유가증권(99.1%), 코스닥(96.4%), 코넥스(93.9%) 시장 순으로 나타났음.

시장 유형별 외부감사의견 현황

(단위: 사, %, %p)

구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증감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합계	비율
적정(비율)	763 (99.2)	1,280 (97.6)	144 (96.0)	2,187	98.1	768 (99.1)	1,330 (96.4)	138 (93.9)	2,236	97.2	49	△0.9
비적정	6	31	6	43	1.9	7	49	9	65	2.8	22	0.9
한정	2	5	1	8	0.4	-	6	1	7	0.3	△1	△0.1
의견거절	4	26	5	35	1.5	7	43	8	58	2.5	23	1.0
합계	769	1,311	150	2,230	100.0	775	1,379	147	2,301	100.0	71	

□(감사계약 유형별 분포) 감사인 지정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83.0%)은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8.1%)보다 현저히 낮으며, '17회계연도 이후 그 차이는 점점 커지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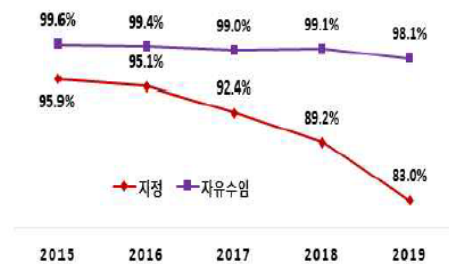
* 감독당국은 상장예정, 관리종목 편입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지정

◦ 이는 지정 기업 중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한 新외감법 시행으로 인해 엄격한 외부감사가 행해진 데 주로 기인

최근 5년간 감사인 선임방법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사, %)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정	기업	147	183	171	232	141
	적정의견 비율	95.9	95.1	92.4	89.2	83.0
자유수임	기업	1,855	1,898	1,984	1,998	2,160
	적정의견 비율	99.6	99.4	99.0	99.1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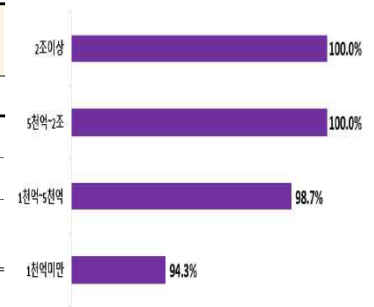
□ (자산규모별 분포)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은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4.3%로 가장 낮음.

◦ 규모가 큰 기업에 비해 작은 기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

자산규모별 적정의견 비율

(단위: 사, %)

구분	1천억 미만		1천억 ~5천억		5천억 ~2조		2조 이상		합 계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적정	879	94.3	943	98.7	246	100	168	100	2,236	97.2
한정	5	0.5	2	0.2	-	-	-	-	7	0.3
의견거절	48	5.2	10	1.0	-	-	-	-	58	2.5
합계	932	100	955	100	246	100	168	100	2,301	100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2)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 (강조사항)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 수는 전기(294사, 13.2%)와 유사한 수준(308사, 13.4%)이나, 기재건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17년 550건 → '18년 486건 → '19년 356건)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 강조사항으로 기재되던 영업환경 변화, 중요한 거래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다수 이전*되어 기재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 '18년 이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가정과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 외 별도의 단락에 기재

-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 기재 내역을 함께 체크하고 참고할 필요

◦ 여행(6사), 항공(5사), 의류(3사), 자동차부품(2사) 관련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19 영향에 기인한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문단에 기재된 주요 내용

(단위 : 건, 사)

항목별 구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증감
특수관계자 등 중요한 거래	154	121	△33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	131	66	△65
회계 변경	117	50	△67
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	34	42	8
기타	50	77	27
강조사항 합계	486건	356건	△130
기재기업 수	294사	308사	△14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기업(2,236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총 84사(3.8%)로 전기(85사, 3.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 '18회계연도 적정의견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의 1년 이내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23.5%)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2.2%)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

감사인 분포

3) 감사인 분포

◆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4 대 법인의 상장법인 집중도는 38.2%로 '15 회계연도(50.5%)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입니다('15 년 대비 12.3%p ↓)

◦ 다만, 자산 5 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 대 법인의 감사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18 년 80.1%→'19 년 82.9%)하였으며, 대형 상장법인 일수록 4 대 법인을 선임하는 경향

□ (4 대 회계법인* 집중도) 4 대 회계법인은 상장법인 2,301 사 중 879 사(38.2%)를 감사하여 그 비중이 전년 대비 4.5%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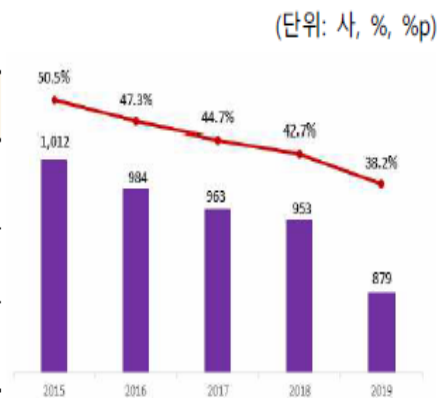
* 소속 공인회계사수, 매출규모, 총감사회사수 등 규모기준 상위 4 개사로 글로벌 4 대 회계법인(PwC, KPMG, EY, DTT)과 제휴관계를 맺은 국내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 최근 5 년간 4 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5 년간 누적 감소율*은 12.3%p 에 이릅니다

* 상장법인 수는 최근 5 년간 299 사 증가하였으나, 4 대 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수는 133 사 감소

최근 5 년간 4 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회사 수와 점유율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4대 회계법인	1,012	984	963	953	879
분석대상	2,002	2,081	2,155	2,230	2,301
비율 (증감)	50.5 (↓2.9)	47.3 (↓3.2)	44.7 (↓2.6)	42.7 (↓2.0)	38.2 (↓4.5)



◦ 4대 회계법인은 기업규모가 큰 유가증권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62.6%)을 유지한 반면, 코스닥(26.7%), 코넥스(17.7%) 시장은 낮음

감사대상회사 수 기준 회계법인 시장점유율

(단위: 사, %, %p)

구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증감	
	유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유증권	코스닥	코넥스	합계	비율	합계	비율
4대 회계법인 (비중)	504 (65.5)	420 (32.0)	29 (19.3)	953	42.7	485 (62.6)	368 (26.7)	26 (17.7)	879	38.2	△74	△4.5
기타 회계법인 (비중)	265 (34.5)	891 (68.0)	121 (80.7)	1,277	57.3	290 (37.4)	1,011 (73.3)	121 (82.3)	1,422	61.8	145	4.5
합 계	769	1,311	150	2,230		775	1,379	147	2,301		71	

□ (시가총액별 점유율) 상장법인 시가총액은 1,649 조원으로 전기(1,600 조원) 대비 49 조원(3.0%) 증가했습니다.

◦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1,447조원(87.8%)으로 전체 상장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기(88.1%) 대비 0.3%p 감소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가총액 기준 감사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90% 수준으로, 4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시가총액과 점유율

(단위: 조원, %, %p)

회계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4대 회계법인	1,246	1,394	1,644	1,409	1,447
분석대상	1,393	1,542	1,842	1,600	1,649
비율 (증감)	89.4 (↓1.5)	90.4 (↑1.0)	89.2 (↓1.2)	88.1 (↓1.1)	87.8 (↓0.3)



□ (자산규모별 점유율)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및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95.8%, 74.0%로 전기(93.3%, 71.0%) 대비 2.5%p, 3.0%p 증가.

- 반면, 자산규모 1천억원~5천억원 및 1천억원 이하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37.5% 및 19.1%로 전년(39.1%, 23.2%)대비 1.6%p, 4.1%p 감소되어 대형 상장법인 일수록 4대 법인을 선임하는 경향

자산규모별 4대 회계법인 및 기타 회계법인 감사 비중

(단위: 사, %)

구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4대법인		기타법인		합 계		4대법인		기타법인		합 계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사	비율
2조 이상	196	93.3	14	6.7	210	100	161	95.8	7	4.2	168	100
5천억~2조	218	71.0	89	29.0	307	100	182	74.0	64	26.0	246	100
1천억~5천억	348	39.1	542	60.9	890	100	358	37.5	597	62.5	955	100
1천억 미만	191	23.2	632	76.8	823	100	178	19.1	754	80.9	932	100
합 계	953		1,277		2,230		879		1,422		2,301	

시사점

III. 시사점

1)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인해 감사범위제한 등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으로 인해 감사범위제한 등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5년 12사 → '16년 21사 → '17년 32사 → '18년 43사 → '19년 65사

- 향후에도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완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 K-IFRS 질의회신 범위 확대(사실판단 포함), 충분한 회계처리 사례제공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 중

2) 4대 회계법인과 중소 회계법인 간 수임경쟁 완화

- 최근 5년간 4대 회계법인의 상장법인 감사대상회사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수임 비중**은 전기 대비 증가

* '15년 1,012사 → '16년 984사 → '17년 963사 → '18년 953사 → '19년 879사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4대법인 감사 비중 : '18년 80.1% → '19년 82.9%

- 대형 상장법인은 대형 회계법인(4대 법인)이, 중소 상장법인은 중소형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계층화가 이루어져 감사인간 수임경쟁은 다소 완화

-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회계법인이 가격 중심의 수입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예) 감사품질이 높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점수 추가 등

3)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사항에 대한 유의가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기업의 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 '15년 77사 → '16년 81사 → '17년 84사 → '18년 85사 → '19년 84사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적정의견이 표명되었다 하더라도 재무 및 영업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

*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대비, 1년 이내 상장 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

4)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대한 불확실성 기재 기업 증가 예상

◦ 여행(6사), 항공(5사), 의류(3사), 자동차부품(2사) 업종에 속한 기업 중 일부는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20년에도 영향이 큰 업종에 속한 많은 기업들이 중대한 불확실성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강조사항으로 기재되던 영업환경 변화, 중요한 거래 등이 핵심감사사항으로 이전 기재*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바,

* '18년 이후부터 개정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가정과 핵심감사사항을 강조사항 외 별도의 단락에 기재

-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강조사항과 핵심감사사항을 함께 참고하여 기업이 노출되어 있는 영업환경 risk 등을 체크하고 유의할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K-IFRS
제1116호 개정 공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K-IFRS 제 1116 호 리스 개정공표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2020. 7. 8]

개요

I. 개요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유행(이하 '코로나19')으로 임차료 할인 등이 있을 경우,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K-IFRS 제1116호 '리스'를 개정하였습니다.

○ '20.6.1.부터 시행하며 조기 적용 가능

주요내용

II. 주요내용

1)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임차료 면제·할인·유예(이하 '임차료 할인 등') 등이 발생한 경우, 리스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리스이용자가 원할 경우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실무적 간편법)

① (적용 조건) 변경 후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같거나 작으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주며, 그 밖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충족되어야 함

② (주석 공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과 임차료 할인 등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 공시

2) (시행일) '20.6.1.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민특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
제지원 보완조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 지난 '20.8.4.(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주요내용)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말소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의 취지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1.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

-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유지

*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②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③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중부세 비과세

- 임대등록일 ~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2.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3.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증과 배제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증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과 배제

4. 의무임대기간 미충족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
-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정하지 않음

[7.11일 이후 등록분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 7.11일 이후 ①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Tax tips: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사항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사항 6선

□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 6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 개정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형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 유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 원 → 4,800만 원으로 인상

2. 기업의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 개정내용

- 투자세액공제를 통합·단순화하여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 (통합·단순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로 개편
- √ (세제지원 대상자산 대폭 확대) 열거된 특정시설(Positive 방식)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Negative 방식: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
- √ (투자증가 인센티브) 당기 투자분 기본공제(대 1%, 중견 3%, 중소기업 10%) + 투자증가분 추가공제*(신설)
 - * [당해 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모든 기업)
- √ (신산업 지원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투자는 기본공제 우대(대 3%, 중견 5%, 중소기업 12%) 및 공제요건 대폭 완화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 개정내용

- (유턴방식 제한 완화)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지원*(20.3.17. 조특법 既개정)
 - *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 소득세·법인세 감면
- (해외생산량 감축요건 폐지)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감축하여야 하는 요건 폐지
-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유턴에 따른 세제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감축수준에 비례하도록 설계
 - 세액감면 대상소득 = 국내복귀소득 × Min[1, (해외감축량/국내생산량)]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공제

□ 개정내용

- 현재 수입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경과실·無귀책인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금번 개정을 통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 다만,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 제한 유지
 - ① 「관세법」상 벌칙사유(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나 부당행위(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②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거래자료를 미제출(거짓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5. 소비활성화 유도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 개정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여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인상

총급여 기준	현 행	개 정 안
7 천만 원 이하	300 만 원	330 만 원
7 천만 원~1.2 억 원	250 만 원	280 만 원
1.2 억 원 초과	200 만 원	230 만 원

6. 외국인 핵심인재 국내 취업 지원

□ 개정내용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의 ❶인력 요건은 강화하되, ❷취업기관 범위는 확대

* 5년간 소득세 50% 감면(소재·부품·장비 기업 근무시 3년간 70%, 2년간 50%)

- (인력 요건) 외국인 연구원 → ❶이공계 등 학사 학위 + 5년 이상 R&D 경력 또는 ❷이공계 등 박사 학위 + 2년 이상 R&D 경력
-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R&D 센터 →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75, 2020.07.0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신청법인은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법인 S법인으로부터 임차한 Intermediate Bulk Container * (이하 "컨테이너")의 대여를 주목적으로 함.

- S법인은 컨테이너를 대여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소득(이하 '쟁점소득')을 지급받으며, 신청법인은 '20.1.1. 전 쟁점소득을 지급할 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2019.12.31. 발효 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소득)제3항에 따라 지급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함.

○ 2019.12.31. 발효 전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에 대한 대가"는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에서 삭제됨.

○ 신청법인은 2019년 12월 컨테이너 사용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면서 해당 대가의 15%를 차감하고 S법인에 지급함.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법인으로부터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2019.12월에 임차한 컨테이너 대가에 대하여 '20.1월에 지급하는 경우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인지.

- 개정된 한·싱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및 적용 세율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하 "싱가포르 법인")이 컨테이너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당 소득을 싱가포르 법인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020년 8월호

-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국조-2116, 2020.07.28)

(사실관계)

- 미국 거주자(A)는 내국법인(갑법인)의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으로서 용역을 미국에서만 제공하며, 미국에서 영상 전화를 통해 갑법인의 이사회에 원격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결정사항을 논의하고 있음.

(질의내용)

-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임원으로서 미국에서만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신】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의 보수는 해당 임원으로서의 용역을 미국에서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업 무 소 개

<h2 style="text-align: center;">업 무 소 개</h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